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축산물 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홍보 협조 요청

1. 귀 기관(협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1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,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축산물 중 가공품은 양 국이 협의한 서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3. 그 간 우리 처는 수출국 정부와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, 양 국간 협의가 완료된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목록을 아래와 같이 식약처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.

   * 확인방법 : 우리 처 누리집(http://www.mfds.go.kr) → 정책정보 → 식품정책정보 → 수출위생증명서 협의현황

4. 2021년 6월 30일자로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부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귀 기관(협회)에서는 원활한 축산물 수입 신고를 위해 수입업체 및 관련 영업자 등에게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수입신고 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>

개 정 전	개 정 후
양 국간 협의된 축산물 가공품 **수출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**	**'22. 1. 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 가공품은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**

붙임 관련 규정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한국식품산업협회, 한국수입육협회, 한국육계협회, 한국육가공협회, 한국유가공협회, 한국관세사협회

주무관 **정의연** 사무관 **강성필** 현지실사과장 전결 2021.7.5. **정정순**

협조자

시행 현지실사과-3255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현지실사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6204 팩스번호 043-719-6200 / eyjung10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